#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23

발의연월일: 2020. 12. 4.

발 의 자: 한병도 · 김영배 · 정일영

김승원 • 이수진 • 이형석

이용빈 · 김민철 · 전용기

최기상 · 김민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공동이용의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제기를 하지아니하는 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2항 및제43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)"을 "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·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[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 결정은제외한다]"으로 한다.

제43조제3항 중 "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)"을 "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·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[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 결정은 제외한다]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 제42조(정보주체의 사전동의) ① 제42조(정보주체의 사전동의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 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 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 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 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 나 공소제기 · 검찰송치를 하지 결정은 제외한다)을 한 날 이후 아니하는 처분[기소중지 또는 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 결정은 제외한다]-----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

- ③ (생략)
- - ① · ② (생 략)
  -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 하는 처분(기소중지 결정은 제 외한다)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④ ~ ⑥ (생 략)

- ③ (현행과 같음) 제43조(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) 제43조(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)
  -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----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 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 •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 분[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 의자중지) 결정은 제외한다]--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